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. 9. 30 선고 2020가합128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8. 12.

판 결 선 고 2021. 9. 30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 2020. 3. 22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21,428,5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C, D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'E'이라는 대부업체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소외 C에게 함께 1억 7,000만 원을 대여하였다(이하 위 대여금을 '이 사건 대여금'이라 한다).

나. C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, ① '1억 원을 월 1.4%의 이율로 차용한다'는 내용의 2013. 12. 13.자 차용금증서, ② '70,000,000원을 월 1.4%의 이율로 차용한다'는 내용의 2014. 1. 10.자 차용금증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.

다.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(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단212905호), 위 법원은 2018. 1. 10. 'C은 원고에게 1억 7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8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.8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주문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라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은 C의 모친인 망 F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의 소유였는데, 망인이 2020. 3. 22. 사망함으로써 배우자인 피고가 3/7 지분, 자녀들인 C, D가 각 2/7 지분씩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.

마. 위 상속인들은 2020. 3. 22.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'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'라 한다)를 하였고, 피고는 2020. 6. 8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3. 22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바. 이후 피고는 2020. 6. 11.경 소외 G,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, G, H은 2020. 8. 28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사.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, 망인으로부터 상속받게 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/7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5, 6, 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와 망인(망인의 사망으로 C이 소송을 수계하였다)을 상대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(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13419호)를 제기하였고, 위 사건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므로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. 그러나 을 제1,

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소와 위 선행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,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본안에 관한 판단

가.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

1) 피보전채권의 존재

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.

2)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

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2/7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C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.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,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) 소결
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수익자인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.

나.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

1)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,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

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. 이 사건

상속재산분할협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, 이러한 사정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

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.

2)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,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.

갑 제7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775,000,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,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/7 지분의 가액은 221,428,571원(= 이 사건 부동산 시가 775,000,000원 × 2/7 지분, 원 미만 버림)이다.

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2020. 3. 22.까지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원리금 합계액을 계산하면 330,981,639원(= 170,000,000원 + (170,000,000원 × 연 16.8% × 5년 233일))이다.

이 사건 부동산 중 2/7 지분의 가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소액이므로,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 해야 할 금액은 위 부동산 지분 가액 상당인 221,428,571원이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 2020. 3. 22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 그리고 이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21,428,57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일주, 판사 최해진, 판사 이범용

별지

목 록

1동의 건물의 표시

부산광역시 수영구

부산광역시 수영구

부산광역시 수영구

아파트 동

[도로명 주소] 부산광역시 수영구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1. 건물의 번호 :

고유번호:

구조 및 면적: 철근콘크리트 구조 84.96㎡

토지의 표시

1. 부산광역시 남구

대

10095㎡

2. 부산광역시 남구

대

20631㎡

3. 부산광역시 남구

대

18614㎡

대지권의 종류: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: 4934000분의 4960

끝.

